

재정운영위원회규정 (명칭변경 2017.12.20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7.12.20.)

제2조(조직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기획처장이 겸임한다.

③위원은 관련보직자 3인 이상, 교직원 3인 이상 및 예산팀장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17.12.20.)

제3조(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과 같고,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(개정 2017.12.20.)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.

제5조(심의사항)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(개정 2017.12.20.)

1. 재정운영계획시행에 관한 사항
2. 신규 및 주요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
3. 주요 사업 집행 후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
4. 학교회계에 속하는 각 부서 예산요구서의 심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
5.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
6.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6조(소집과 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.

제7조(회의록)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회의록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한 결과를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간사)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기획처 예산팀 직원중에서 총장이

6-1-23~2 제6편 위원회

임명한다.(개정 2017.12.20.)

제10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
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